

**제7회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배
충청남도 태안 전국어울림마라톤대회
- 과 업 지 시 서 -**

2026. 6.



태안군 장애인체육회

목 차

I . 과업개요

1. 과업개요	1
2. 추진방향	1

II . 과업범위 및 내용

1. 과업 세부내용	2
2. 일반사항	2
3. 기타사항	5

I. 과업의 개요

1. 과업개요

- 과업명 : 제7회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배 충청남도 태안 전국어울림마라톤대회 운영 대행용역
- 과업의 목적
 - 지역 관광자원을 활용한 성공적 대회개최로 태안브랜드 가치 제고
 - 관광과 스포츠가 혼합된 축제의 장 마련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
 - 장애인 스포츠인구의 저변확대 및 장애인식개선을 위한 화합의 장 마련
- 기간: 대행업체 선정 및 계약 이후 용역수행결과보고서 접수완료시까지
- 코스: 태안군 안면읍 꽃지해수욕장 일원
- 과업내용
 - 과업수행계획 수립 및 결과보고
 - 식전행사, 개회식, 마라톤대회(장애유형별/비장애인), 기타 부대행사 등의 준비·운영 전반
 - 대회사무국 운영 및 참가자 접수 관련 업무계획 수립·운영
 - 홍보방안 기획 및 수립·운영 전반
 - 텐트, 기념품 등 행사관련 장비 준비·운영
 - 교통통제 및 안전사고 방지대책 수립·운영(우천 시 대책 포함)
 - 홍보물(현수막, 교통통제홍보 포함 등) 제작 및 설치·운영
 - 대회운영 인력, 자원봉사자단체 모집, 업무분장 및 운영계획, 교육 등 준비·운영
 - 미세먼지 발생 및 우천시 운영, 기타 행사 전반의 대행
- 예정금액 : 금 208,000,000원(금이억팔백만원) ※부가가치세 포함

2. 추진방향

- 스포츠 경기를 통한 관광객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
-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스포츠 축제로 승화
- 탄력적인 교통통제 및 차로 확보로 군민들의 교통 불편 최소화

II. 과업범위 및 내용

1. 과업 세부내용

구 분	주 요 내 용
기획/진행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마라톤대회(홍보계획 포함) 세부계획 수립 제출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참가접수 방안, 코스 운영 방안 - 대회장 일원 부대행사 등 세부기획 및 진행에 관한 사항 - 소요예산 산출내역 및 세부집행계획(선정시 제원별 구분) - 우천 시, 미세먼지 발생 시 운영대책
대회 및 부대행사 운영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마라톤대회 및 부대행사 운영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식전행사, 시상식, 이벤트 등 부대행사 전반사항 - 동호인들의 호응을 이끌어낼 수 있는 프로그램 - 장애인, 비장애인 가족단위 참가자를 위한 프로그램
선수관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마스터즈 참가자 모집, 접수·등록 계획 ○ 참가자 사후관리 방안 제시(기록관리, 기록증 배부 등) ○ 코스별, 구분별(5km,10km,하프코스) 참가선수 동원 계획
행사장 운영 및 장비·물품, 인력배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코스별, 장애유형별 시·종점 인원통제, 준비운동, 완주메달 수여 및 포토존 설치 등 마라톤대회 운영 전반에 대한 계획 ○ 자원봉사자 참여 확보 및 교육 방안 제시 ○ 부대행사 및 체험행사 운영장비(음향, 조명, 임차 등) 운영계획
교통대책 및 주로 운영방안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마라톤대회 전 구간에 대하여 주로 운영, 주차 유도 등 책임관리 ○ 대회구간 교통 통제 및 소통, 우회도로 확보, 주차 관리계획 ○ 코스별, 장애유형별, 현수막·음료대, 안전요원·장비 배치계획
안전대책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마라톤대회 운영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대책 강구(전문인력 확보 등) ○ 안전요원 및 안전장비 배치계획 ○ 자원봉사자 및 운영요원 안전교육 방안 제시
전문 홍보 및 결과 보고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SNS 및 홈페이지 운영 방안 ○ 마라톤대회 개최 및 개최결과 홍보전략 제시 및 실행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온·오프라인(언론포함) 홍보 ○ 홍보물 발송·게시 등 구체적인 방안 제시 ○ 대회종료 후 30일 이내 결과보고서(정산서 포함) 제출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제원별 정산 필수

2. 일반사항

가. 과업수행 원칙 및 준수사항

- 본 과업의 성실한 수행을 위하여 과업수행자는 신의와 성실, 책임의식을 갖고 추진하여야 함
- 발주기관은 과업수행과정에 부적절한 과업 참여자가 있거나 과업수행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될 때는 즉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, 제안자는 즉시 시정요구에 응하여야 함
- 대회 참가비 등은 태안군장애인체육회와 협의하여 결정하고, 그로 인해 발생한 수입금 또한 협의하여 지출하여야 한다.
- 과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과업 중 일부 변경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협의를 거쳐 용역의 자문을 수행할 수 있음
- 용역대가는 본 과업의 수행내용인 「제7회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배 충청남도 태안 전국어울림마라톤대회」 운영대행 용역의 기획·연출 및 운영비용, 기타 소요 비용 일체로 하며, 인건비·재료비·시설임차 등 제비용 중 선금 지급 등을 하고 사후 정산의 절차를 거쳐 잔금을 지급하되 정산 후 실제 지급액과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계약금액 범위 내에서 정산결과에 따라 처리함
- 본 과업수행에 필요하여 제작한 일체의 홈페이지, 영상물, 디자인 및 설치물 등의 판권, 저작권, 소유권은 발주기관에 귀속됨

나. 보고서 제출

- 용역수행계획서 제출
 - ▶ 과업수행자는 착수 전까지 용역수행계획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
- 진행상황 보고
 - ▶ 과업수행자는 계약체결 이후 필요시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과업에 대한 추진상황, 실행계획 등을 대면 또는 서면으로 보고·제출하여야 하며, 과업진행 중 또는 과업진행 후에 발주기관의 출석, 설명, 자료제출 등의

요구가 있을 경우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함

○ 용역결과보고서(최종보고) 제출

- ▶ 과업수행자는 행사 종료 후 30일 이내에 결과보고서를 과업요청자에게 제출해야 함
- ▶ 과업수행자는 행사진행 전반에 대하여 디지털사진을 촬영하고 사진첩 및 USB, 동영상 파일(10분 분량)로 제출해야 함
- ▶ 결과보고서에는 참여인원 현황(코스별, 유형별, 지역, 연령대 분석) 대회 부대행사 만족도, 대회 진단과 문제점 분석을 통한 보완책 제시 등이 포함되어야 함

다. 과업기간의 조정

- 과업기간(성과물 제출기간 포함)은 원칙적으로 조정할 수 없으나 과업수행 중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라 행사 일정이 조정된 경우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과업기간을 조정할 수 있음.

라.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(계약의 해지)

-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음
 - ▶ 발주기관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여 과업을 진행한 때
 - ▶ 계약조건을 위반한 때
 - ▶ 입찰시 제출한 제안서의 내용과 실제 과업을 다르게 수행하거나 회사 소개 내용, 용역실적 이행증명 등에 중대한 차이가 있어 적절한 과업 수행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
 - ▶ 신종 전염병의 확산 및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
 - ▶ 기타 과업수행이 어렵다고 인정된 경우 등

마. 과업수행 결과에 대한 보안의무

- 과업수행자는 과업착수와 동시에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함

-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비밀을 외부에 공개 또는 제공해서는 안 됨
- 과업수행자의 교체 시에는 인계·인수를 철저히 하여 자료의 유출을 방지하여야 함
- 본 사업의 기본계획 및 과업수행계획서 등이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자료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함

3. 기타사항

- 제안내용의 확인을 위하여 과업요청자가 추가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과업수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하며, 제출한 제안서는 반환하지 아니한다.
- 행사와 관련 인허가를 득하여야 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과업수행자가 모든 절차를 수행하여야 한다.
- 발주기관은 과업수행자의 정산결과에 따라 총 지급액이 계약총액에 미달 시에는 그 금액으로 최종 정산처리하며, 초과 시에는 과업수행자의 부담으로 한다. 다만 발주처의 서면 요청으로 새로운 재화나 용역이 변경(추가)된 경우에는 사전 승낙된 부분에 대한 초과분을 정산 처리한다.